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125 발의연월일: 2022. 4. 6.

발 의 자:전용기·서삼석·최기상

박 정・송갑석・김두관

강훈식 · 정청래 · 이상헌

장경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소득·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이는 정부가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.

한편,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,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.81명(2021년 기준)에 불과해 '0명대'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함.

이에,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(안 제88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"을 "2024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	제88조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
한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한 과세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	
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	
(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	
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	
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	
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	
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	
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	
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	
다)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비과	
세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<u>2022</u>	<u>2024</u>
<u>년</u>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	<u>년</u>
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	
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	
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	
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8.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
	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